

<첨부>

소규모펀드 수시공시(2012. 1. 25.)

자본시장법 제 89 조, 동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 제 4 호 및 제 5 호 등에 따라 소규모펀드 수시공시(1 개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공시사유 발생일: 2012 년 1 월 21 일

공시사항: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입니다.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1 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펀드: 아래 7 개 펀드

펀드명	협회표준코드	발생일 설정잔액	발생일순자산총액	기준가격	비고
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KR5235877598	2,467,688,611	1,779,203,059	721.00	
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 C1 (주식)	KR5235877606	304,589,377	214,630,872	704.66	
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 C-e (주식)	KR5235877614	154,332,017	109,449,341	709.18	
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 N (주식)	KR5235877622	1,090,300,000	812,485,062	745.19	
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 C2 (주식)	KR5235997651	39,452,349	27,814,590	705.02	
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 C3 (주식)	KR5235997669	117,673,076	83,102,092	706.21	
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 C4 (주식)	KR5235997677	41,138,182	43,227,298	1,050.78	

* 종류형펀드는 운용(통합)클래스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하위클래스 원본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 모자형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어도 관련 모펀드 원본액이 50 억원 이상이면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자형펀드는 자펀드 원본액이 50 억원 이상이어도 관련 모펀드 중 어느 하나라도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펀드는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주)
대표이사 마이클 리드